

금융투자업 규정

<목 차>

1. 계열사 금융거래 집중 제한 규정 연장

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	소관부처	금융위원회	작성자	이름	전은주
	담당부서 (과)	자산운용과		직급	사무관
	국장	김태현		연락처	02-2100-2662
	과장	김기한		이메일	ejfsc@korea.kr

정책 책임자 직위

성명 (서명)

< 규제 개요 >

기본 정보	1.규제사무명	계열사 금융거래 집중 제한 규정																					
	2.규제조문	금융투자업규정 제4-20조제1항제5호자목·제10호마목, 제4-63조제6호, 제4-77조제15호·제16호, 제4-93조제6호·제6호의2																					
	3.위임법령	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8조제5항제14호, 제87조제4항제9호, 제99조제4항제7호, 제109조제3항제10호																					
	4.유형	신설	5.입법예고	2017.3.14																			
규제의 필요성	6.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계열사 상품판매 집중으로 인한 투자자 선택권 침해방지 및 시장 상황 악화에 따른 시스템리스크 전가 등을 예방하기 위해 계열사 금융거래 집중을 제한하는 규제를 도입('13년) ○ 규제도입 이후 위반 사례는 드물었으나, 계열사 집중현상이 소폭 감소에 그치는 등 아직까지 규제도입 목적을 달성했다고 판단하기에는 시기상조이므로 정부개입 불가피 																					
	7.규제내용	○ 계열사 펀드판매 한도 규제(신규판매 50%), 계열사 투자부적격 증권의 펀드 등 편입 및 투자권유제한 등																					
	8. 피규제 집단 및 이해관계자	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 colspan="2">유형</th> <th>인원수 또는 규모</th> <th>의견 수렴방식</th> <th>의견내용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피규제자</td> <td>금융회사</td> <td>투자매매·중개업자, 집합투자업자 투자자문·일임업자, 신탁업자</td> <td>입법예고</td> <td>-</td> </tr> <tr> <td rowspan="2">이해관계자</td> <td>금융감독원</td> <td>-</td> <td>입법예고</td> <td>-</td> </tr> <tr> <td>금융투자협회</td> <td>-</td> <td>입법예고</td> <td>-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		유형		인원수 또는 규모	의견 수렴방식	의견내용	피규제자	금융회사	투자매매·중개업자, 집합투자업자 투자자문·일임업자, 신탁업자	입법예고	-	이해관계자	금융감독원	-	입법예고	-	금융투자협회	-	입법예고	-
	유형		인원수 또는 규모	의견 수렴방식	의견내용																		
피규제자	금융회사	투자매매·중개업자, 집합투자업자 투자자문·일임업자, 신탁업자	입법예고	-																			
이해관계자	금융감독원	-	입법예고	-																			
	금융투자협회	-	입법예고	-																			
9.기대효과	○ 정보열위에 있는 투자자에게 계열회사 부실에 따른 위험이 전가되는 것을 방지하고, 금융투자업자의 선관·충실의무에 부합하는 건전한 영업행위 정착유도																						
규제의 적정성	10.영향평가 여부	기술영향평가	중기영향평가	경쟁영향평가																			
		해당없음	해당없음	해당없음																			
	11.비용편익 분석(정성 분석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(편익) 투자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금융투자상품 판매 시장의 공정 경쟁을 유도할 수 있으며, 계열회사의 부실이 투자자에게 전가되는 등 이해상충 가능성이 경감되는 등 편익이 큼 ○(비용) 계열사 금융상품 판매비율 설정 등에 비용이 소요되나, 4년전부터 시행하던 제도로서 추가 비용부담은 사실상 없음 																					
기타	11.일몰설정 여부	○																					

〈조문 대비표〉

현 행	개 정 안
<p>< 신 설 ></p>	<p>부 칙</p>
	<p>제1조(유효기간) 제4-20조제1항제10호마목의 규정은 2017년 4월 23일부터, 제4-20조제1항제5호자목, 제4-63조제6호, 제4-77조제15호·제16호, 제4-93조제6호·제6호의2의 규정은 2017년 10월 23일부터 2년간 그 효력을 가진다.</p> <p>제2조(불건전 영업행위에 관한 적용례 등) 제4-20조제1항제10호마목의 규정을 적용할 때 금융위원회고시 제2013-8호 일부개정규정 부칙 제1조에 따른 그 개정규정의 시행일부터 2019년 3월 31일까지 판매금액을 산정하는 경우에 그 개정규정의 시행일 이전에 체결(시행일을 포함하여 그 이후에 변경 또는 갱신되는 계약은 제외한다)된 계약에 따른 판매금액은 제외한다.</p>

I. 규제 필요성 및 대안선택

1.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

- 계열사 상품판매 집중으로 인한 투자자 선택권 침해방지 및 시장 상황 악화에 따른 시스템리스크 전가 예방 등을 위해 계열사의 금융거래 집중을 제한하는 규제 도입*(’13년)

* 일몰규정으로 도입되어 ‘15년 연장을 추진한 바 있으며, ’17년 일몰시기 재도래

- 규제도입 이후 위반 사례는 드물었으나, 계열사 집중현상이 소폭 감소에 그치는 등 아직까지 규제도입 목적을 달성했다고 판단하기에는 시기상조이므로 정부개입 불가피

2.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

① 대안의 내용 및 선택 근거

< 규제대안 1 : 계열사 금융거래 집중 제한 규정 연장 >

① 계열사 펀드 판매 한도(신규 판매 50%)

- 지난 2년간 규제 위반 사례는 드물었으나, 아직까지 규제도입 목적을 달성했다고 판단하기에는 시기 상조

- 당초, 신규로 판매되는 펀드 중 계열사 펀드 비중을 낮추어 총 계열사 펀드 비중을 낮추려 하였으나, 지난 2년간 계열판매 비중이 소폭* 감소에 그쳐 관행개선 수준이 아직 미흡

* 규제 이후 전체 누적(공모) 계열판매 비중 약 5.6% 감소(’12말 47.8%→’16말 42.2%)

* 상위 10개 판매사 평균 누적(공모) 계열판매 비중은 여전히 54%에 달하며, 그 중 계열 판매 비중 50% 미만은 3개사에 불과

- 계열운용사 펀드 수익률이 대체로 저성과 경향*을 보이고, 개방형 판매채널이 아직 완전히 시장에 정착하지 못한 상황**

* 계열운용사가 있는 전체 판매사 평균 계열/비계열 펀드 수익률 격차도 상당

구분	설정이후	최근 3년평균	비고
계열펀드 수익률	67.3	2.4	주식형 공모펀드 기준 (총 41사)
비계열펀드 수익률	82.5	4.9	

* 주요 판매사 31사 중 23사의 계열사 펀드 수익률 열위(공모주식형,3년평균)

** 펀드슈퍼마켓의 시장점유율은 1.8%에 불과(14.12말 공모펀드 판매잔고 기준)

② 계열사 투자부적격 증권의 펀드 등 편입 및 투자권유 제한

- 계열회사가 발행한 고위험채권을 투자일임·신탁에 편입하는 경우 계열회사의 이익을 위해 투자위험 등을 충분히 고지하지 않아 투자자의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이를 제한하는 규제
- 이는 계열회사의 부실이 투자자에게 전가되는 등의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을 해소하기 위한 취지
- 최근 美 금리인상 가능성 등 경기변동성 확대, 대기업 구조조정이 진행중인 점 등 감안*할 때, 과거 동양 유사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당분간 계열사 증권 편입 제한 규제를 유지할 필요

* 금융계열사를 보유한 대기업의 경우 과거 동양그룹처럼 계열증권사 및 신탁 등을 활용하여 부실 자회사 자금 지원을 할 개연성 상존

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

- 금감원, 금투협회, 증권사·자산운용사 등 업계 의견 종합 수렴결과,
 - 투자자 비용 절감, 계열사 간 거래집중 방지 등 규제목적 달성과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동 규제를 연장하는 데에 동의

3. 기대 효과

- 정보열위에 있는 투자자에게 계열회사 부실에 따른 위험이 전가되는 것을 방지하고, 금융투자업자의 선관·충실의무에 부합하는 건전한 영업행위 정착유도

II. 규제의 적정성

1. 목적·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

- (규제목적)** 계열사 금융상품에 대한 투자한도 규제 및 투자권유 제한 등을 통해 계열회사 부실에 따른 위험이 투자자에게 전가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규제목적의 실현 필요성이 큼
- (규제수단)** 금융회사의 계열사 판매비율 설정 등 일련의 업무절차 등이 정착되어 가는 과정으로 규제수단의 부담 수준이 높지 않음

2.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

영향평가			시장유인적 규제설계	국제기준 정합성	일몰 설정 여부
기술	경쟁	중기			
해당없음	해당없음	해당없음	해당없음	해당없음	○

○ 영향평가

- 일몰설정 여부

- '13년 규제 도입 당시 규개위 권고를 수용하여 일부 규제*는 2년 후 규제 적정성을 재검토하는 일몰규정으로 도입한 바 있음

* 계열운용사 펀드 50% 판매한도 설정, 계열사의 투자부적격 등급 회사채·CP 권유 및 편입 제한, 투자일임 및 신탁의 계열사 증권 편입 제한

3.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

○ 해외사례

- 외국의 경우 계열회사와의 거래 제한 관련 내용은 대부분 금융회사의 자율적인 내부통제기준으로 규율되고 있음

○ 해외 선진 금융회사는 고도의 윤리기준(Code of Ethics)에 기반하여 고객과 이해상충이 발생할 수 있는 행위를 사전에 스스로 엄격히 통제하고 있음

* 例; 씨티그룹(Citi Group)의 경우 내부통제기준에 따라 계열회사 펀드판매 한도를 25%로 자율 설정·운영중

□ 일본은 우리와 유사한 수준, 미국은 더 강한 규제 적용

- (일본) 증권회사에 대해 계열회사 발행증권의 인수 관련 주간사 회사업무 수행을 금지 (증권회사의 행위규제 등에 관한 내각부령 §12)
- (미국) 증권회사는 상호 지배관계에 있는 계열회사 (10% 이상 의결권 보유 또는 사실상 경영권 행사)의 증권 인수에 참여 금지 (FINRA Rule)

○ 타법사례

- ① (舊 증권투자신탁업법) 계열 증권회사와 자산운용사간 매매위탁거래를 운용사 총 주문금액의 20%로 제한('00.6월)
- ② (舊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) 法 제정('04년) 당시 동 한도가 20%로 동일하게 유지되다가, '06.5월 50%로 완화*됨

* '05년 참여정부 당시, 한투·대투 등 투신사 구조조정을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투신업의 경쟁력 강화, 영업기반 마련 등을 위한 규제완화의 일환

Ⅲ. 규제의 실효성

1. 규제의 순응도

○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

- '13년 규제도입 이후 계열사 금융상품 판매비율 등 업무체계가 마련되어 있어 금융회사의 준수부담이 크다고 할 수 없음

○ 규제 차등화 방안

- 해당사항 없음

2. 규제의 집행가능성

○ 행정적 집행가능성

- 계열사에 대한 금융거래 제한은 이미 시행되고 있는 규제이므로 기존 금융당국의 관리·감독 여건상 규제집행에 어려움은 없을 것

○ 재정적 집행가능성

- 기존 계열사 금융거래 관련 감독 및 검사에 투입 중인 인력·예산에 비해 추가적인 소요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

IV.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

1. 추진 경과

- 금감원, 금투협회, 증권사·자산운용사 등 업계 의견 종합 수렴결과, 투자자 비용 절감, 계열사 간 거래집중 방지 등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동 규제를 연장하는 데에 동의

2. 향후 평가계획

- 금융감독원의 금융회사별 주기적인 검사를 통해 금융회사별 규제 이행사항을 확인하고 미흡할 경우 원인분석 및 대응방안 마련

3. 종합결론

- 동 규제는 투자자보호와 금융회사의 건전한 영업행위 정착 등 규제 실익이 큰 반면 금융회사의 추가 업무부담은 적으므로 규제를 연장하는 것이 바람직